#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714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4월 26일 발 의 자:김규남, 고광민, 김경훈,

김길영, 김영철, 김종길, 김태수, 김혜영, 문성호, 김태수, 김혜영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성연, 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윤영희, 이민석, 이병윤, 이종배, 이종태, 이효원, 장태용, 정지웅, 해수지, 최민규, 정지웅, 허 훈 의원(29 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으며, 이러한 범죄 행위 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적되고 있음.
- 이에 실거주 목적의 청년 임차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, 주거 관련 정 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 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를 위하여 주택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

#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) ①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,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
- 2.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
- 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
- 4.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
- 5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
-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주거지원 관련 유 관기관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9조 중 "제7조"를 "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신 설>		제7조의2(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
		공 등 지원) ① 시장은 주거용
		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
		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
		정보를 신청할 경우, 청년의 임
		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
		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
		있다.
		1.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
		2.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
		<u>당</u>
		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
		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
		시 의무사항 안내
		4.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
		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
		5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
		필요한 사항 등
		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
		을 위해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
		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
		<u>활용할 수 있다.</u>
		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

제8조(청년주거실태조사)(생략) 저

## ② (생략)

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주거
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ㆍ협
력할 수 있다.
제8조(청년주거실태조사) ① (현
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
<u>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</u>